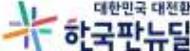
		<h1>보 도 자 료</h1>			
<b>보도 일시</b>	<b>2022. 3. 8.(화) 배포시</b>	<b>배포 일시</b>	2022. 3. 8.( 화 )		
<b>담당 부서</b>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b>책임자</b>	과 장	최운정 (02-2110-1520)	
		<b>담당자</b>	사무관	성재식 (02-2110-1521)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 3.21~23일 서류 접수, 4~5월 현장실사, 6월 중 지정 여부 의결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8일(화)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매년 지정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3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 ③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개정 전 고시에서는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정 받았으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심사항목도 경중을 고려하여 점수제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끝.



#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2022. 3.



## 1 개요

### □ 추진 배경

- 핀테크, IT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
  - ※ 본인확인 건수 ('16년) 10.77억건 → ('21년) 26.3억건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추진

### □ 주요 경과

-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도입(정보통신망법 개정) '11. 4월
-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정보통신망법 개정) '12. 2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 '11~'20년

구분	기업명(총 20개)	지정연월
아이핀(3개)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11.9월
통신(3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12.12월
카드(8개)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17.12월 '18.12월
인증서(6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비바리퍼블리카	'20.10월 '20.12월 '21.8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22. 1월
-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수요조사 및 설명회 개최 22. 2.16.

## 2 심사 일정

### 1 정기 심사

#### □ 전체 일정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수립 및 공고(3월 초) → 신청서 접수(3.21~23) → 서류 심사(3.25) → 현장 실사\*(4~5월) → 종합심사(6월 초) →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6월 말) → 지정서 교부\*\*(7월초)
- \* 현장실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따라 연장·단축될 수 있으므로 이후 일정 변경 가능
- \*\* 조건부 지정이 의결된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의 조건 이행 여부 점검 뒤 이행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정서 교부

#### □ 신청서 접수

- (접수일) 2022. 3. 21(월) ~ 23(수)
- (제출서류) ①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서류 ④정관·규약 ⑤과거 3년간 주요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 자료
-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서식 1 참조
-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 2(작성요령) 참조

#### < 제출 서류 부수 및 작성방식 >

- 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 1부
- ② 사업계획서 ③증명서류 ④정관·규약 ⑤ 재무제표 등 ⇒ 원본 1부, 사본 15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1벌

※ 사업계획서 구성 : 사업계획서 요약문(25p 이내), 제1권(신청기관 명세, 조직, 재무), 제2권(보호조치 계획 및 설비규모)  
\* 제1권, 제2권 합쳐 200쪽 넘을 수 없으며, 필요시 부속서류 제출가능

- (제출방식)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

- 담당자 : 이병수 주무관(02-2110-1522)

### 2 수시 심사

#### □ 개요

-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심사 외 수시 심사 신청 가능
- ※ 다만, 신청 건에 대한 수시심사 개시 여부는 신청 사유의 긴급성,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 일정,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예정

#### □ 진행 절차

- 방통위 사전 협의 완료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종합심사 →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 지정서 교부(조건이 부과된 경우 조건 이행 및 방통위의 이행여부 점검 후 지정서 교부)
- ※ 제출 서류 및 제출 방식은 정기심사 시와 동일

##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15인 이내로 구성되며(세부사항 비공개), 코로나19 확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 중 교체 가능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

### □ 심사위원 직무

-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에 참여하며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항목 '적합'/'부적합' 여부 판정 및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 □ 서류 심사(3.25, 방통위)

-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명시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 현장 실사(4~5월, 지정신청기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신청 기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비·설비·관련 시스템 등 실사

※ 1社당 5일이 소요되며 기관별 현장 실사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 종합 심사(6월)

- (청문) 심사위원이 지정신청 기관의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예 : 최고 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 실시

※ 지정 신청기관별 청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평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요 심사항목 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 □ 심사 기준 변경 사항(참고사항)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22.3.1 시행)으로 심사항목 재구성 및 부분 점수평가제 도입

- (심사항목 재구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평가기준) 재구성(92→87개)

- (부분 점수평가제 도입)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 대해 '적합' 평가를 받고,

- 나머지 심사항목(64개)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항목별 과락 점수는 없음)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시 총점과 상관없이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총점 800점 미만인 경우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미만 →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고시 별표 4) >

심사사항	세부 심사기준	배점(점)	비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90	지정기준 : ①총점 800점 이상 획득 ②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평가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평가를 받고 총점 800점 미만 받은 경우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22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	160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130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80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50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중요심사항목)	적합/부적합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60	
기술적·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적합/부적합	
	재정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적합/부적합	
설비규모의 적정성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 설비	20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20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4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30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40	
합계**		1,000	

\* '적합' 판단기준

- (중요심사 항목)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합' 평가한 경우
- (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 합계점수 산출방법: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세부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 가운데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

지정대상기관 선정

- 심사위원회는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획득한 지정신청 기관을 '지정대상 기관'으로 선정함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획득한 지정 신청 기관의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방통위 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대상기관에 대한 본인확인 기관 지정 여부 의결(필요 시 조건 부가)

 지정서 교부

- (조건이 부가된 경우) 지정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 교부
-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 방통위가 지정대상 기관에 지정서 교부